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2016. 03. 10.	인사총괄심의관실

I. 연구회 개요

▣ 2011. 8. 31. 창립

○ 초대 회장 김○○ ○○지방법원장(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 지난 민○○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에서 **김○○ 부장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

※ 김○○ 부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 대법관 사태 때 전국 법관 최초로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코트넷에 게시하였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요 멤버임 ⇨ 개인 명의로 천거하였으나, 실질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그룹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

○ 현 회장은 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11. 10. 21. 회칙 제정 (주요 내용은 첨부1 참조)

▣ 2016. 3. 8. 현재 회원 수 428명

○ 법원장 1명, 고법부장 11명, 지법부장 115명, 평판사 301명

○ 연도별 회원 수 증가 추이 ☞ 13년 말 대비 2년 만에 2배 이상 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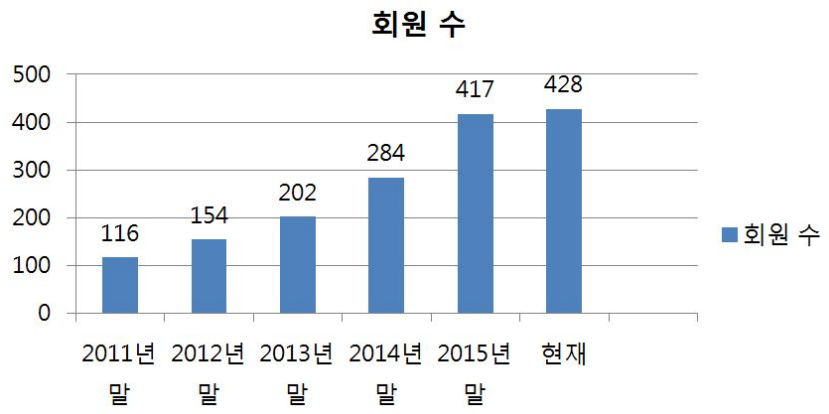

- 회원수가 15개 전문분야연구회 중 2012년 14위에서 2015년 5위(중복가입 가능한 연구회 제외하면 3위)로 급상승

○ 연도별 가입인원

기간	가입인원	20기 이상	21~25기	26~30기	31~35기	36~40기	41기 이하
2011년 (창립)	115명	3	7	41	50	14	
2012년	38명	0	2	8	8	16	4
2013년	48명	0	3	7	17	20	1
2014년	82명	5	3	16	30	22	6
2015년	132명	1	12	15	27	60	17
2016년	11명	0	1	3	2	4	1

- **2014년부터 가입인원 급증** 추세 ☞ 인맥을 활용한 다단계식 회원 유치 방식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5년에 36~40기의 젊은 판사들의 대거 가입** 주목됨

○ 평판사 기수별 분포

	31기	32기	33기	34기	35기	36기	37기	38기	39기	40기	41기	42기	43기	계
회원수	37	34	23	20	22	27	30	31	26	22	22	6	1	301
기수현원	152	169	166	148	146	149	164	163	154	131	137	32	9	1,720
비율	24%	20%	13%	13%	15%	18%	18%	19%	16%	16%	16%	18%	11%	17%

- 평판사 현원 대비 17%로서 점유율 높은 편

- 31기의 경우 24%로서 4명 중 1명꼴

- 임관 후 만 2년 된 42기의 비율이 18%로 높은 점 눈에 띔

▣ 핵심 그룹 (추정)

○ 간부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창립멤버 등이 핵심 그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 (첨부2 참조) ☞ 주로 우리법연구회 회원 또는 운동권 경력 있는 법관들임

II. 문제상황

1. 비정상적 운영 (전문분야 이탈 ⇨ 사법행정 개입)

▣ **국제인권법과 무관**한 사법행정 논의들을 '인권법' 명목 하에 진행

○ 인사모의 상고법원, 합의부 운용 등 논의가 대표적 사례

○ 핵심 회원인 송○○ 판사가 2016. 2. 코트넷에 게시한 '판사회의 활성화' 관련 문건은 인사모 논의 결과물로 알려짐

▣ 외연 확대로 추동력 및 자신감 확보됨에 따라 이탈 가속화

○ 연구회가 사법부 내 대표적인 연구회로 자리 잡자 박○○ 판사의 제안으로 2015. 7. 핵심 회원들이 주축이 된 인사모 발족하여 인권법과 무관한 사법제도 논의 시작 ⇨ 사법행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냄

- 2015. 8. 상고법원 도입에 관하여 논의 후 투표 결과 다수가 회의적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경과보고 형식으로 연구회 게시판에 게시

- 대법원이 사법행정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자 송○○ 판사가 2016. 2. 판사회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코트넷에 게시 ☞ 인사모 연구결과물로 추정

▣ **이○○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 높음

○ 인사모에서 2015. 10. 대법관 후보 추천절차에 대해 논의하려다 연기

○ 연구회 회원인 문○○ 부장, 박○○ 판사(인사모 총무) 등은 이전에도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코트넷에 공개적으로 글을 게시한 바 있음

○ 핵심 그룹에서 김○○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거나 측면에서 지지할 가능성 농후함

2. 법관 사회 내 과도한 영향력 확대

▣ 주제의 시의성 + 탈권위 + 인맥 활용 포섭 ⇨ 젊은 법관들에게 어필

○ 창립된 지 **불과 4년 만에 회원 수 400명이 넘는 대형 연구회**로 성장

▣ **핵심 그룹에 한정된 사고가 법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

○ 사법부 관료화 비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판사회의 활성화 등

○ **인사모를 연구회 내 소모임으로 발족**한 것은 **치밀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

3. 소수 주장의 지지기반 착시 효과

▣ 핵심 그룹 주장이 연구회 이름 또는 **다수 법관 지지로 포장**될 가능성

▣ 송○○ 판사의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게시물 및 댓글이 대표적 사례

○ 송○○ 판사의 게시물에 다수 법관이 지지 댓글 ⇨ 일부 언론 보도

○ 실상 댓글 다수는 이미 견해를 같이 한 핵심 회원들의 것으로 파악

- 당시 인사모 핵심 회원 13명 중 11명이 댓글 게시 (송○○ 판사 포함 시 12명)

- 댓글 28개 중 22개가 연구회 회원이 게시한 것

4. 위기상황 초래 위험성

▣ 돌출행동으로 보수언론의 '법원 때리기' 유발 우려

○ 2015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최○○ 부장(운영위원), 황○○ 판사는 모두 연구회 회원임

○ 대법원 판례를 정면에서 비판하며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내린 김○○ 부장은 연구회 핵심 회원이고, 마○○ 부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음

○ 연구회 대외협력팀장인 이○○ 판사는 최근 연구회 게시판을 통해 2016. 3. 19. 개최 예정인 **우리법연구회의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에 대해 안내 및 홍보함

5. 법원 내 사조직 형성 우려

▣ 끈끈한 유대관계를 기초로 서로 끌어주는 법원 내 사조직 형성 우려

▣ 폐쇄적 성격의 사적 모임 활성화로 비회원 법관들의 소외감 증대

III. 접근방향

1. 근본원인 : 핵심 회원의 연구회 주도

▣ 성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핵심 회원들이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연구회를 창설한 것으로 추정

▣ 이들 핵심 회원들이 연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논의주제와 과정을 지배하며, 우리법연구회, 운동권 활동 경험 등을 접목하여 조직적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로(코트넷, 판사회의 등)로 목표달성 위해 노력

2. 해결책 : 주도권 회수 ⇨ 인사모 폐지 + 연구회 정상화

가. 인사모 : 폐지 vs 관리 vs 방치 ⇨ 폐지

▣ 인사모는 **문제상황의 집약체이자 핵심**

○ 인사모 결성(2015. 7.) 전까지 연구회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상황은 발생×

○ 최근의 일련의 돌출행동은 대부분 인사모 회원들이 주도 ☞ 컨트롤타워 역할 의심됨

▣ 인사모 활동은 **국제인권법 연구와 무관** ⇨ 근거 없고 부적절

○ 회장(이○○ 실장)도 인사모 면담 시 이를 지적 (2015. 9. 14.)

○ 비핵심 회원 및 법관 다수도, 인사모 주장의 당부와는 별개로, 인사모가 연구회의 분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은 공감할 것

▣ 인사모를 **커뮤니티 안에 둘 경우 득보다 실이 큼**

○ **공식 커뮤니티 게시판의 게시만으로도 언론 보도 가능성 높고**, 이 경우 '법원의 공식 커뮤니티에서 논의되었다'는 관점에서 보도될 가능성 있음

○ 인사모 폐지 후 커뮤니티 밖에서 동일 취지로 주장하더라도, **일부 법관들의 개별적 돌출행동**으로 인식되어 행정처의 부담 적고 파급력도 낮을 것

○ 인사모의 문제제기가 연구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비

핵심 판사들 일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커뮤니티 안에 있다고 해서 활동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

○ 커뮤니티 안에 있는 경우 게시판을 통해 활동내역의 일부 확인 가능
but 어차피 공개 범위는 재량에 달려 있어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을 것

나. 연구회 : 폐지 vs 관리 vs 방치 ⇨ 관리

▣ 인권법 분야에 대한 순수한 학술적 연구는 적정하고 필요

▣ 회원 다수는 인권법에 대한 관심 또는 선배 추천으로 가입하였을 뿐

▣ 연구회를 폐지할 마땅한 명분도 없음 ☞ 무리한 폐지 시 오히려 동정여론 및 행정처에 대한 반감만 확산될 가능성

▣ 적정하게 관리하여 정상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으로 판단

Ⅳ. 구체적 방안

1. 인사모 폐지 방안

▣ **이○○ 대법관 후임 제청절차 시작 전**에 폐지 필요

▣ 인사모만의 선별적 폐지보다는 연구회 전반 및 분과 재편 차원에서 접근

○ 인사모만 폐지 시도 시 반발 우려 大 ⇨ **계기와 명분 필요**

가. 명분

▣ [명분①] 행정처 차원에서 **법원 커뮤니티의 전반적 개편** 계획 공지

○ 전문성 강화 위해 연구회 세분화

○ 연구회별로 부적절(전문분야 이탈), 중복, 비활동 분과 등 재정비

○ 연구회별 개편 계획을 평가하여 예산의 차등 지급 등 실시

▣ [명분②] **다수 회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임을 표방

○ 인사모의 부적절성이 다수 회원들의 의사임을 표방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내

세우는 핵심 회원들 입장에서 거부할 명분 적을 것

○ 사전에 회장 주도로 비핵심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 있음

▣ [명분③] **언론의 공격 가능성** 활용

○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인사모에 대해 취재 중(특히 우리법연구회와의 관련성)으로, 연구회와 법원 전체의 위기상황 초래 가능성 언급

○ 보수언론에서 경향신문의 2016. 2. 22.자 '침묵 깬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위원 우리가 뽑자' 기사의 취재원 판사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부각

- 실제로도 위 기사는 인사모 회원이 기사 내용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됨

- 경향신문 인터넷 2016. 3. 6.자 [기자메모]"사법행정 참여 법관 직접 선출 외면한 법원행정처"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로 추정됨

<참고 : 언론 활용 방안>

○ 보수 성향 언론사에 아래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여 인사모 비판기사를 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들이 주축
- 최근의 긴급조치, 병역법위반 등 일련의 튀는 판결 주도

○ 일종의 '제살 도려내기'로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임

○ 명분의 제공 측면에서는 최선이나 법원 전체가 비난받을 우려 ⇨ 신중한 접근 필요

나. 폐지 방식

▣ [1안] 자발적 해산

○ 최선책 but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성공 여부는 **명분의 설득력과 회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음

○ 사전에 비핵심 회원들 다수의 수렴된 의견이 확인된다면 적잖이 주효할 것

○ 김○○ 법원장을 통한 자제 당부도 검토 가능 ☞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의 잡음을 염두에 두고 전술적으로 자제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2안] 운영위원회 결의로 폐지

○ 핵심 회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장악한 현 역학구도 하에서 기대 어려움

○ 현 운영위원 임기 종료 후 **운영위원 다수를 확보**(아래 주요 의사결정 라인 확보 방안 참조)한 뒤 시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합당

☞ 다만 이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인사모 폐지가 지연되는 문제 있음

▣ [3안] 총회 결의로 폐지

○ 인사모가 연구회 분과로서 어울리지 않음은 다수 법관의 공감 가능

○ 다만 존치로 결의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감 대폭 증가

○ 총회 결의 시에는 **비핵심 회원들의 적극 참가 유도** 필요 (전자투표 활용 등)

▣ [4안] 행정처 폐지권고 및 회장 수용

○ 일반적 관리권한의 발동으로 커뮤니티의 목적 외 활동에 대해 규제

○ 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함이 상당

▣ [검토] **1차로 자발적 해산 시도 + 2차로 운영위원회 장악 후 폐지**

○ 1차로 회장의 자발적 해산 권유

- 사법행정은 인권법 연구와 무관함 지적 + 사법행정위원회 등을 통한 참여 권유

○ 해산 불응 시 2차로, ① 회장은 인권법 연구와 무관한 활동의 자제를 당부하고, ② 이후 운영위원 교체 시점에 운영위원 다수를 확보한 뒤, ③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인사모를 폐지

○ 어떤 경우든 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

2. 연구회 정상화 방안

가. 연구회 내 주요 의사결정 라인 확보

▣ 회칙 상 주요 의사결정은 회장,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결정

▣ **핵심은 의사소통 원활한 고법부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임

○ 핵심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되는 경우 연구회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 직권 폐지 등 최후수단 불가피

○ 정치력·지도력 있고 고집과 강단 있는 분일 것

○ 부장심의관 이상의 행정처 경력은 없는 편이 좋을 것

- 행정처의 연구회 접수 시도라는 반발 가능성 있음
- 동시에 그와 반대로 연구회가 행정처의 지원을 받는다는 오정보 제공 우려도 있음
- 참고로 만일 연구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법부장의 회장 선임이 제지된다면 연구회의 위상 하락 효과도 기대 가능(다만 핵심 회원 또는 그 동조 회원 중에 고법부장 이상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 가능 여부는 예측 어려움)

▣ **운영위원 과반을 평균적 성향의 판사로 구성**

○ 운영위원은 회장이 간사·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회칙 5조 2항)

○ 반발 적도록 평균적 성향으로 인정받는 판사들을 과반수 임명

○ 동시에 운영위원 1~2명은 의사소통 가능한 법관 진입

▣ **운영위원 과반 확보 전까지는 현 체제 용인 불가피**

○ 운영위원 과반 확보 전 재편 시도 시 후임 회장 선임 과정에서 곤란 발생

▣ 그 외 의사소통 가능한 지법부장 및 평판사들의 가입 및 활동 지원

나. 부정적 성격 부여 ⇨ 비핵심 그룹의 이탈 유도

▣ **비공식 경로**로 '문제 있다'는 지적 계속 ⇨ 법관 사회 내 거리낌 확산

▣ 가장 확실한 성격 규정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정의하는 것

○ 기존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소위 '튀는 판결'을 주도한다는 비판 ⇨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판결에 대한 신뢰 추락 가능

○ 연구회가 대법관 제청 등 민감한 주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

▣ 법원장, 수석부장, 일부 법관 등 통해서 일선 법관들에게 우려 전달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선 언론 활용 방안이나 신중한 접근 필요

다. 연구회의 주제 및 구조의 간소화

▣ ‘국제인권법’은 지나치게 광범위 ⇨ **구체적이고 협소한 아젠다로 대체**

○ 주제가 좁을수록 활동영역 축소 ☞ 난민, 인권조약 등으로 한정

○ 법원 커뮤니티 재편 과정에서 축소를 권고하고, 제외된 소주제 일부는 타연구회로 이관

▣ 연구회 구성이 지극히 조직적·전략적 ⇨ **회장, 간사, 운영위원으로 간소화**

○ 현 구성은 운동권 조직을 연상케 하는 전략적, 전술적 구조로 보임

○ 회장 등 간부진 23명, 보조인력 33명, 합계 56명으로 대규모 집행부 운영

○ 회장, 운영위원, 간사, 총무(팀장), 분과위원회, 편집위원회, 지역위원회의 7개 단위로 구분되고, 총무(팀장)는 학술, 기획, 홍보, 정책, 대외협력으로, 분과는 법관론, 독서모임, 인산회, 난민, 표현자유, 소수자, 문화예술, 인사모로, 지역위원회는 광주전남, 대전, 부산, 서울중앙, 서울남부, 인천, 수원으로 세분화

라. 경쟁 연구회 활성화

▣ 탈권위적 운영, 소규모 분과를 통한 상시 모임 강화 등 **인권법연구회의 장점 벤치마킹**

▣ 인권법연구회의 주제 일부를 이관받는 한편, **참신한 주제들 발굴**

▣ 고법부장 이상 법관들, 현직 행정처 실장, 부장심의관, 부장연구관, 기타 **선발성 인사 경력 있는 법관들의 대거 배치 및 적극 활동** ⇨ 젊은 법관들의 관심 유도

▣ 커뮤니티 **예산 지원** ☞ 뒤풀이, 1박 2일 행사 등 활성화

▣ 인사모 폐지, 부정적 성격 규정과 함께 진행 시 효과 배가 기대

마. 법원 커뮤니티 재편

▣ **모든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을 공개로 전환**

○ 근거 : ① 비공개 이유 없음 ② 일선 법관들의 자료검색 등 접근 필요 ③ 연구회 활동이 활성화될수록 비회원인 법관들의 소외감 증대

○ 연구회 활동이 공개되면 연구회 본연의 전문분야와 무관한 이슈를 연구회의 틀 안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

○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예규 9조)가 아래 커뮤니티 활동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연구회들의 목적 외 활동 유무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 커뮤니티 활동의 **관리 강화**

○ 연구회 운영성과의 평가항목으로 **'활동의 목적 적합성' 항목**을 추가

- 인사모와 같이 연구회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은 감점사유가 될 것

○ 매년 운영성과 평가를 엄격히 하고 그에 따라 **예산 차등 집행**

- 인권법연구회의 2015년 예산배정 순위는 15개 연구회들 중 4위로 높은 수준

- 인사모 등 존치 시 예산배정 대폭 감소할 것 ☞ 세미나, 뒤풀이, 학술대회 등 제약

▣ **중복가입 금지원칙 적용 강화**

○ 전문분야연구회를 재판실무연구회와 비재판연구회로 구분

- 비재판연구회는 중복가입을 원천 금지하고, 재판실무연구회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무분담 담당시기에만 중복가입을 허용하되 사무분담 변경되면 즉시 탈회 처리

○ **경쟁 연구회 육성, 부정적 성격 규정이 선이행된 이후**에 중복가입 금지를 강화하여 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유도

- 성급한 중복가입 금지 강화는 인권법연구회로의 집중도만 높일 수 있음

○ 현 전산 시스템 상으로는 중복가입이 금지되는 연구회의 경우도 시솝만 승인하면 중복가입 가능 ☞ 전산적인 개선 필요

▣ 연구회별 회원수 제한은 도입 유보

○ 전문분야연구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법관별로 연찬을 희망하는 분야의 연구회에 가입하는 것임 ☞ 회원수 제한으로 가입 불가능은 공감 얻기 어려움

바. 핵심 회원에 불이익 부과

▣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 법관 사회 내 거리낌 증가

▣ 다만 간접적 방법이고 우수자원 활용에 제약 초래 ⇨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

첨부1. 예규 및 회칙 규정 일부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 (회원)

② 법관은 2개 이상의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그 예외가 되는 연구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은 관련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 (총회)

① 연구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총회에서는 회장의 선출 및 결산보고 기타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제1조 (목적)

이 연구회는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와 논문발표, 세미나,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그 연구성과를 재판실무에 반영하여 국민과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총회)

②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간사 또는 운영위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간사의 선출
3. 결산보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임원)

① 연구회는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필요할 경우 5인 이내의 총무, 6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회장과 간사는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총무와 운영위원은 간사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와 총무 및 운영위원은 연구회

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회는 주요 안건의 결정을 위하여 회장, 분과위원장, 편집위원장, 간사,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요구로 소집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안, 기타 총회의 의결사항 이외의 안건을 결정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16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구성(2016. 3. 1.기준)

			업무	꾸리미	비고
회장	이규진	18			
운영위원 (6) 가나다순	이	16	연구회 운영 방안 제시, 논의		
	고	23			
	최	28			
	박	30			
	방	33			
	진	39			
간사	정	27			
총무(팀장) (5) 가나다순	나	32	학술	이 (34), (35), 유 (39), 강 (41), 최 (41), 박 (42), 박 (43)	팀장에게 팀 구성 자율성 보장
	김	32	기획	윤 (34), 김 (36), 박 (37), 이 (37), 홍 (38), 공 (40), 조 (40), 김 (37)	
	진	36	홍보	윤 (38), 문 (37), 김 (42), 김 (40)	
	이	31	정책	김 (30), 송 (31), 하 (38)	
	이	37	대외협력	정 (39), 김 (42), 서 (39), 이 (41)	
분과위원회 (소모임) 위원장 무순	강	35	법관론	오 (39)	○분과위원회의 수는 제한 없음 ○5인 이상 구성, 신고 시 승인 ○위원장, 꾸리미는 자체 협의 결정
	강	35	독서모임	박 (39)	
	임	25	인산회	오 (39)	
	안	34	난민	하 (38)	
	김	32	표현의 자유	류 (40)	
	김	25	소수자 인권	윤 (38)	
	강	35	문화예술	여 (42)	
	김	30	인사모	박 (31)	
편집위원회 위원장	박	36	재판자료집 발간	임 (32)	○위원장, 편집위원은 운영위 거쳐 임명 ○위원장에게 구성 및 운영 자율권 보장
지역위원회 (지역분과위) 위원장 무순	송	24	광주전남	공 (40)	○지역위원회의 수는 제한 없음 ○5인 이상 구성, 신고 시 승인 ○위원장, 꾸리미는 자체 협의 결정
	·	·	대전	조 (40)	
	김	29	부산	김 (37)	
	·	·	서울중앙	○매뉴얼모임: ○점심모임:	
			서울남부		

2. 인사모 회원

가. 최초 주도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김○○	24기	서울중앙	·인사모 총무(사퇴) ·우리법연구회 회원
2	이○○	26기	서울동부	·인사모 최연장자(좌장격)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우리법연구회 동조
3	이○○	27기	수원	
4	이○○	27기	서울고	·우리법연구회 회원
5	정○○	27기	연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6	김○○	30기	광주	·인사모 분과위원장 ·우리법연구회 회원
7	김○○	30기	대구	
8	김○○	30기	전주	·연구회 창립 주도 ·우리법연구회 동조
9	박○○	31기	서울중앙	·인사모 총무 ·15.04.16. 코트넷에 박○○ 대법관 후보자 사퇴 요구 게시 ·우리법연구회 회원
10	박○○	31기	서울고	·인사모 결성 최초 제안 ·우리법연구회 회원
11	신○○	31기	서울중앙	
12	이○○	31기	대법원	
13	송○○	34기	서울중앙	·16.02.01. 코트넷에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 건의문 게시 ·우리법연구회 회원

나. 후속 가입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김○○	25기	인천	·14.12.15. ‘횡성한우’ 판결 비판으로 정직 2월 ·14.09. 원세훈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글 게시
2	이○○	32기	서울중앙	·사법행정 책임자들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2015년 평정 기재
3	류○○	40기	춘천	·15.05.17. 박○○ 판사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 요구 게시글에 대한 지지글 게시

다. 동조그룹(추정)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사○○	23기	서울중앙	·16.02.22. 의원면직 ·우리법연구회 회원
2	문○○	37기	서울중앙	
3	홍○○	38기	서울중앙	

라. 창립회원

순번	법관	기수	가입일	현 소속	비고
1	김○○	14	2011-08-31	대구	
2	김○○	15	2011-08-31	춘천	우리법연구회 회원
3	김○○	22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4	김○○	24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5	문○○	26	2011-08-31	서울남부	우리법연구회 회원
6	이○○	26	2011-08-31	서울동부	우리법연구회 동조
7	이○○	26	2011-08-31	서울동부	
8	이○○	26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9	이○○	27	2011-08-31	서울고등	우리법연구회 회원
10	김○○	28	2011-08-31	대전	
11	선○○	28	2011-08-31	수원	
12	박○○	28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13	허○○	28	2011-08-31	의정부	
14	최○○	28	2011-08-31	인천	
15	이○○	29	2011-08-31	광주	
16	최○○	29	2011-08-31	서울가정	
17	신○○	29	2011-08-31	청주	
18	이○○	30	2011-08-31	대법원	
19	김○○	30	2011-08-31	부산가정	
20	한○○	30	2011-08-31	부산	
21	김○○	30	2011-08-31	전주	우리법연구회 동조
22	김○○	31	2011-08-31	대전가정	
23	강○○	31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24	이○○	31	2011-08-31	서울중앙	
25	박○○	32	2011-08-31	대구가정	
26	이○○	32	2011-08-31	서울중앙	
27	정○○	33	2011-08-31	서울남부	우리법연구회 회원
28	김○○	33	2011-08-31	서울중앙	
29	서○○	35	2011-08-31	춘천	
30	전○○	36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31	남○○	39	2011-08-31	전주	